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9.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1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9월 1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9회 임시회 제7차 행정위원회('98. 9.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분청 기구를 개편하고 아울러 구분청, 보건소, 등의 통합조례를 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획실을 폐지하여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밑으로 하고, 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과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통합 또는 명칭변경
-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 밑으로 하고, 도시정비국의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건설교통국 밑으로 소관부서 조정
-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체육과로, 시민과는 민원봉사과로, 생활환경과를 청소행정과로,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로 하고
- 조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조례 운영
 - 행정기구설치조례 - 당초 : 구분청
 - 변경 : 구분청, 보건소, 등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등 조례(안)은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함께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감축 개편하려는 것으로 '98. 8. 31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맞도록 우리구의 기구를 감축개편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계”제가 폐지되므로 우리구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 명칭을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22일 이종해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98. 8. 31 대통령령 제 15875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거 명칭변경

다.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제2조에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은 이를 “담당 주사”로 한다를 신설 삽입

라. 수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심사결과 : 수정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 13 호
----------	--------------

제안년월일 : 1998. 9. 22.

발 의 자 : 이종해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 '98. 8. 31.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명칭 변경

2. 수정주요골자

- 부칙 제2조에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은 이를 ‘담당 주사’로 한다”를 신설 삽입
- 기타 부분은 구청 제출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중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중 ‘기획실’ 또는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보되 다만,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밑으로 하고, ‘기획실장’ 또는 ‘총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보며, ‘시민생활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보고, ‘시민생활국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보며,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보고, ‘도시정비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보며,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도시관리국’ 밑으로 하고,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보고,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보며,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보며,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체육과’로 보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체육과장’으로 보며, ‘시민과’는 ‘민원봉사과’로 보고, ‘시민과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보며, ‘사회진흥과장’은 해당분야별 과장으로 보고, ‘부과1과·부과2과’는 ‘부과과’로 보며, ‘부과1과장·부과2과장’은 ‘부과과장’으로 보고,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보며, ‘가정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보고, ‘생활환경과’는 ‘청소행정과’로 보며, ‘생활환경과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보고, ‘주택과·도시정비과’는 ‘도시관리과’로 보며, ‘주택과장·도시정비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본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은 이를 “담당주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생략</p> <p>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중..... “도시관리과장”으로 본다.</p> <p>제3조 생략</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생략</p> <p>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중..... “도시관리과장”으로 본다.</p> <p>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은 이를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p> <p>제3조 생략</p> <p>제4조 생략</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

제출일시 : 1998. 9. 14.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사유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분청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획실을 폐지하여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밑으로 하고, 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과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통합 또는 명칭 변경.

나.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 밑으로 하고, 도시정비국의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건설교통국 밑으로 소관부서 조정.

다.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체육과로, 시민과는 민원봉사과로, 생활환경과를 청소행정과로, 주택과와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로 하고

※ 부서감축 : 1국 4과 감축

라. 조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조례 운영

- 행정기구설치조례
 - ┌ 당초 : 구 본청
 - └ 변경 : 구 본청, 보건소, 등

3.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 ⇒ 시정12200-600('98.6.22)호

-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안) ⇒ 행자부 자제12200-322('98.9.8)호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서울특별시와 합의되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 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청사관리·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인사·후생복지·직무분석·공무원평가·조직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업무 총괄, 구·동행정의 지원
4.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5. 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안의 심사·소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8.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0.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
11. 호적에 관한 사항
12. 병사에 관한 사항
13.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14.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5. 관광진흥 및 문화제에 관한 사항
16.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17.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18.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재무국) ①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 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물품관리·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구 세입의 총괄
5.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복지국) ①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보호·의료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청소년지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5.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상공업 및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8. 소비자보호·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고용안정 및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10.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1. 대기보전 및 소음·진동대책에 관한 사항
12. 수질보전·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택개발·도시재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무허가 건물 및 위험 건축물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착공·준공 등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공원개발·관리 및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6. 조경계획, 조경시설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7.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방위기본계획 수립, 민방위대 편성, 훈련에 관한 사항
9.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가로순찰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5. 도로계획사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가로등·보안등·지하도·지하광장·터널시설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8.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유수지 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10. 배수펌프장 및 수문 기전설비 유지관리
11.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개발 업무 및 수자원 보존
13.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교통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불법 주·정차 위반단속 및 범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17. 교통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8. 교통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3장 보건소

제10조(설치) 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둔다.

제11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동

제13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관할구역)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중 “기획실” 또는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보되, 다만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밑으로 하고, “기획실장” 또는 “총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보며, “시민생활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보고, “시민생활국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보며,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보고, “도시정비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보며,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도시관리국”밑으로 하고,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보고,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보며,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로 보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보며,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체육과”로 보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체육과장”으로 보며, “시민과”는 “민원봉사과”로 보고, “시민과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보며, “사회진흥과장”은 해당 분야별 과장으로 보고, “부과 1·2과”는 “부과과”로 보며, “부과1과·부과2과장”은 “부과과장”으로 보고,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보며, “가정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보고, “생활환경과”는 “청소행정과”로 보며, “생활환경과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보고, “주택과·도시정비과”는 “도시관리과”로 보며, “주택과장·도시정비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계장”은 이를 “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제4조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조례가 따로 제정될 때까지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